

오보의 문제점과 언론중재

안광식
이대교수 · 중재위원

우리가 이제는 현대사회에서 신문과 방송 등의 언론매체가 없이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2 차대전 이후에 언론의 세력이 이상하게도 팽창이 되어 전에는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일종의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오스카 와일드는 「미국에서 대통령은 4 년동안 밖에 집권하지 못했지만 신문은 영원히 집권한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제는 언론이 「사회적 세력」의 기구로 당당히 군림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런데 언론이 그 막중한 세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국가와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지만, 그 세력을 악용하면 국민을 오도하고 국가와 사회를 바람직하지 못한 도탄의 방향으로 빠뜨릴 수도 있다. 그런데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이 의도적이건 또는 부지중에 오보와 허위보도를 하게 되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사실 가운데서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언론의 최고의 가치와 생명일진대, 언론이 그 어려운 사명을 표기할 수는 없으며, 만일에 진실을 찾지 못하고 오보 또는 허보를 했을 경우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이 어려운 진실을 추구하기 위한 언론의 사명을 언론중재위원회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이며, 언론에서의 진실여부를 판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중재위원회의 사명과 의무이다. 그래서 언론중재제도의 존재이유는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언론의 기본사명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신문과 방송은 마감시간이라는 압력과 싸우면서 제작되는 기적의 산물이기 때문에 매체의 속성상 때로는 오보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상황의 여하에 불구하고 오보 또는 허보가 빈번해지면 허위적 사실에 의한 분위기가 이 사회에 만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문이나 방송 그리고 그밖에 대중매체들은 오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질 줄 알아야겠다는 것이다. 지난 몇 해 동안에 두드러진 오보사건으로는 한국산 호랑이, 총건바둑이, 예방접종 주사에 의한 쌍둥이 사망, 장애인 회비착복, 대구발 로이터통신기사, 경희대 경찰투입, 사제간의 디스코춤, 강남북 혼합 학군제 등에 관한 기사들이며, 그 밖에 알려지지 않은 오보가 많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런데 오보의 책임은 언론인들과 함께

뉴스원칙에도 있다. 오보는 물론 대부분의 경우 기자의 부정확성, 해석의 오류, 과잉된 열성, 부주의, 성급한 판단, 고의적 날조 등에 의해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한편 뉴스원칙의 실수, 그릇된 정보제공, 의도적 조작 등에 의해서도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언론풍토에서는 아직까지도 오보에 대한 정정 보도를 반기는 경우가 드물고, 비록 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매우 신문의 수치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오보를 자주하면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우려에서 나온 발상 때문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대부분의 신문에서는 한 주에 3번 내지 5번의 정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워싱턴 포스트」지와 같은 좋은 신문일수록 다른 신문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정정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보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사에 관한 정확도를 알아내기 위한 방책으로 「디트로이트 프리프레스」지는 독자들에게 프로필 기사와 탐사 보도기사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기사 등 모두 10개의 기사에 관하여 정확성을 측정하도록 한 페이지의 질문지를 보내고 있다. 질문지의 약 75% 가량이 회수되는데 결과적으로 오보와 관련된 기자와 편집자들은 편집국장에게 오보 발생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앞으로 유사한 오보를 어떻게 모면해야 할 것인가를 메모로 써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센트 피터즈버그 타임즈」지는 중요한 인터뷰 취재의 경우는 반드시 2명의 기자를 보내고 허락하에 녹음을 해둔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신문사에서 오보와 그 밖의 기사를 심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옴부즈맨」(자체 평가인)을 두고 있으며, 많은 잡지사들은 정식직원 또는 프리랜서로서 「심의원」(factcheckers)제를 두고 있다. 한편 보도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미디어에서의 선정주의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의 센세이셔널리즘은 올바른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바람직한 사회규범을 설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흥미와 오락, 순간적 도피와 시간낭비, 정치에 대한 외면, 사회적 문제의식의 결여, 도덕과 윤리의 퇴폐, 본능적 자극, 공공성보다 상업성을 발휘하는데 주효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선정주의의 궁극적 목표는 영리추구 이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 신문이나 방송은 큰 사건이 생기면 의례히 그 내용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 과장하여 보도·편집하는 경향이 습성화된 것 같이 보인다. 미디어에서는 또한 피의자에 대한 판결이 나기도 전에 기사와 제목을 통하여 유죄판결과도 같은 「언론재판」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언론이 성급하게 흥미위주로 사건을 취급하여 보도하는 습성 때문에 생기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요즘 언론이 「공공의 이익」보다 수용자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보다 더 염두에 두는 경향이 농후하고, 질적으로 좋은 신문·방송·잡지를 제작하려는 노력보다 흥미위주의 「오락성과 선정성」을 발휘하여 상업주의에 영합하려는 성향이 짙기 때문에 빈번히 나타나는 결과의 소산이다. 그러나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을 되새기지 않더라도 언론침해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언론 스스로가 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견지에서 언론중재제도는 언론의 사명인 「진실과 정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 개개인에 대한 「언론침해를 보호 내지 구제」하여 주기 위해서 그 존재가치와 의의가 있다. 앞에서 이미 논한 바와 같이 언론보도의 여러가지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국가의 기본법에서 규정한 피해배상청구권이다. 헌법에서는 「언론 ? 출판이 타인의 명성이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상의 요청에 따라 생긴 것이 정정보도청구권이며, 언론기본법 제 49 조 1 항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을 규정해 놓고 있다. 정정보도청구권이 새로 인정됨에 따라 피해자는 자신에 관계된 보도를 행한 언론사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게 되었고, 언론사는 그 지면과 시간을 할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열거한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침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존재하게 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한 기능은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와의 언론사간의 분쟁을 중재함으로써 당사자들이 법적 투쟁을 거치지 않고, 그들간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재위원회는 언론침해의 내용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발행인 또는 방송국의 장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재신청이 접수되었다고 신청인 또는 신청 내용이 정정보도청구권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당 중재부의 전원합의로 중재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의 기능은 중재역할을 함에 있어 피해자나 언론사의 어떤 한쪽에도 편향되지 않으며, 중재제도의 취지는 중재의 중립성을 유지함으로써 공평·공정·정확한 보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중재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중재기관이기 때문에 무슨 결정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다만 명백한 허위사실이나 오보 또는 언론침해에 대한 정정을 법원 판결을 통하여 해결하는 최종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중재를 통하여 신속히 해결하자는 것이다. 한편 언론중재를 함에 있어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내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이다. 언기법(49 조 4 항)에 의거해 볼 때 기사종류 중에서 객관성에 입각해서 씌어지는 스트레이트·피쳐·해설·심층보도 등 뉴스 보도기사는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만, 필자의 주관성에 의해서 작성되는 사설·칼럼·문예평론·독자투고 등은 일반적으로 정정보도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를 하는 기능까지도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위원회와 꼭 같은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가 세계의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 특유의 중재제도가 탄생한지 불과 5년 밖에 안되는 이 시점속에서 볼 때 언론중재제도는 누구에게나 언론침해를 당했을 경우 손쉽게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피해자와 언론사 모두가 시간과 비용을 안들이고 쌍방의 이익을 위해서 유용하게 선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문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피해자들이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언론사들이 또한 얼마나 잘 이 제도에 협조하고 호응하느냐에 따라 중재제도의 효율성 여부가 좌우될 것이다. 지금까지 언론중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언론사의 비협조, 재래적인 언론풍토, 언론침해에 대한 수용자들의 체념, 개인의 권익보호의식의 결여, 법령상의 미비, 중재제도에 대한 사회의 인식부족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회적 요인들이 중재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언론중재제도가 생기기 이전까지는 언론이 사소한 오보를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중대한 허보를 하더라도, 그리고 개인의 권리를 아무리 침해하여도, 그와 같은 사회적 오류에 대한 책임을 어느 누가 추궁하지도 않으면서 거의 속수무책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언론사가 오보나 허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기피하거나 싫어하는 풍토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도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사회적·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인권을 유린하면서 무책임한 낡은 습성의 「횡포의 제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일이다. 언론도 이제는 자신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질 줄 알아야겠다는 것이 조금도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며, 언론중재제도가 그 무거운 책임을 함께 감당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국민 개개인은 법이 보장하는 자신의 권익을 충분히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언론침해를 받았을 때 정정보도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만 민주국민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으면서 언론으로부터 「진실보도」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언론중재제도는 긴 안목으로 볼 때 결국은 언론의 신뢰도와 공신력을 향상시키고 언론의 가치와 수준을 높이자는 데 목적이 있으며, 언론사와 수용자 모두에게 이익과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근본취지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 개개인의 권익이 언론에 의해서 침해당해서도 안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언론의 자유가 또한 언론중재로 인하여 침해당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명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봉사해야 하는 기구가 언론중재위원회라는 점을 다시금 밝혀 두는 바이다.

- 서울대 영문학과, 미국 콜롬비아대 신문대학원
- 코리아 헤럴드 외신부장 역임
- 저술 : 「신문과 정부와의 갈등」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위원